

정책논단

한·미FTA 저작권 협약에 따른 제주지역의 지식재산권 현실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순덕

제주지역에서는 주로 FTA 협정 관련 1차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 중 문화산업은 비가시적인 상품이 가시적인 상품으로 변형될 때 지식재산권이 개입하게 된다.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시안, 디자인, 상표 등)은 주로 무역과 관계가 있어서 문화자원의 권리에 대한 개념은 희박한 것 같다.

1. 머리말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당사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교역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12년 1월 현재 FTA 발효 7건 44개국, 한·미FTA 체결 1건, FTA 협상 진행 7건 12개국, FTA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7개국 등이다.

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고,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한·미FTA 발효일이고, 저작권집권 보호기간은 2013년 8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관련 산업분야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개정된 저작권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재산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저작권법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될 것이나 제주지역에서도 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지식재산권과 특허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주로 FTA 협정 관련 1차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 중 문화산업은 비가시적인 상품이 가시적인 상품으로 변형될 때 지식재산권이 개입하게 된다.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시안, 디자인, 상표 등)은 주로 무역과 관계가 있어서 문화자원의 권리에 대한 개념은 희박한 것 같다. 그러나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보호와 권리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제주도의 문화자원(자연·인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한·미FTA협정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을 통해 국가 간 보호 장치와 의무사항을 점검해 봄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제주지역의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는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민들이 상표와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관련 사업에 적용할 때 저작권법을 유념해야 하며, 저작물 활동을 하는 저작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취해야 하고, 누구나 도용과 복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저작권법과 FTA 관계

1)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정 과정

저작권법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저작권법은 11장으로 본문 142개조와 부칙 16개조를 합하여 15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저작권법의 효시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일본의 저작권법을 차용한 데 불과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57년 1월 28일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제정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이후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전면 개정되어서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법에 명시된 저작물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② 음악저작물
-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⑦ 영상저작물
-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해당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속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이용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세분화 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리키며,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을 한 시점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인 경우에는 최초로 음반에 음을 고정된 때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을 한 시점에서 50년간이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 등록을 하면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간 보호를 받는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11)를 참조하여 국내외 저작권 동향을 이해함으로써 저작권 관련 종사자와 저작물 이용자들이 활용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2) 국내 저작권 동향

(1) 스마트폰 앱스토어와 저작권

2010년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어플리케이션’ (이하 앱)과 관련된 불법 저작물의 생성과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가 생겼다. 이에 정부에서는 모바일 앱을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켜 단속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및 단속과 관련해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 중이다.

(2) 공중파 재송신 저작권 논쟁

2010년 9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재송신 관련 논쟁이 일부 있었다.

(3) e스포츠 활성화를 둘러싼 저작권 논의

미국의 벤처업체 불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출시한 ‘스타크래프트Ⅱ’ 출시에 따른 저작권 논쟁이 발생하였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사용한 기존 출시품인 ‘스타크래프트Ⅰ’도 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국내 다른 업체와 독점적 계약을 맺었다.

(4) 전자출판과 저작권

2010년 들어 태블릿PC(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전자책 이용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책의 저작권 문제와 유통, 표준규격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3) 국외 저작권 동향

(1)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에 관한 논의 진전

2010년 2회 회의를 통해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 시청각 실연 및 방송 사업자의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2)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침해물에 대한 국제적 대처를 위한 국제규범 성안

2010년 11차 협상을 통해 민사절차, 국경 조치, 형사절차,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등을 다루었다.

(3) 미국:저작권 보호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 제출

미국은 ‘2010 지적재산집행 공동전략계획’을 공표하여 인터넷상 지적재산 침해 감소를 위한 협력,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4) 영국: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영국은 ‘2010년 디지털경제법’을 통과시켰으며, 2011년 상반기에 효력이 발생했다.

(5) 독일:제3차 저작권법 개정 논의

2010년 7월 7일 독일 저작권단체연합회는 터치스크린이 있는 휴대폰은 11유로, 터치스크린이 없는 휴대폰은 4유로의 사적복제보상금 부가 제도를 마련하였다.

(6) 프랑스:저작권신탁관리단체, 유튜브와 합의

2010년 11월 25일 유튜브사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협약을 체결하였다.

(7) 일본: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단속 강화

(8) 중국:불법 복제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강화

(9) 러시아:WTO 가입 노력 강화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적재산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10년 10월 29일).

3. 한·미FTA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한·미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로 시행된다. 다만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2011년 6월 30일 공포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법률 제10807호)」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양 협정의 공통사항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일시적 저장의 복제 확인, 저작권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관련 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이에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꾀하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1:6).

-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설정한다.
- 출판권과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었던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 등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 발행권 설정에서 출판권 설정을 제외하여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 저작인접권(방송 제외)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다.
- OSP의 면책 요건을 추가하고, 복제·전송자의 정보제공 청구 제도를 도입한다.
- 위조 및 불법라벨의 유통, 영화 도촬 및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으로 사전 등록하도록 한다.
-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한다.

4. 제주지역의 저작권 관련 업무 담당 기구 현황

제주지역에서는 FTA와 관련하여 업무를 대행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기구로 제주상공회의소 내에 제주지식재산센터와 제주FTA활용센터를 두고 있다.

1) 제주지식재산센터

이 센터에서는 산업재산권, 특허권 관련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특허와 브랜드 관련 상담, 국내외 특허출원과 상표출원 지원 등 제주지역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를 적용한 기업 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 제주FTA활용지원센터

기획재정부 산하에는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가 있으며(현재 : 인천, 경기, 대전, 전북,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제주상공회의소에 설치(2011년 10월 개소)되어 있다.

이 센터에서는 주로 FTA와 관련이 있는 제주소재 기업과 수출·입기업 관련자 대상 교육,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본부 향토지원산업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즉 이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에 입법 예고되었으며, 2012년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조례규칙 심의안이 통과되고, 1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주로 상표와 특히 관련 지식재산권을 다룬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는 「서귀포시의 저작권보호정책」코너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귀포시는 도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의 내용을 보호하고,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작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도는 게시자의 동의없이 이를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게시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시는 반드시 게시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합니다.
- 시는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의 신뢰도나 정확도 그리고 게시자 이외의 이용자가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서귀포시홈페이지에 수록된 콘텐츠의 무단 또는 불법 복제 배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되나, 사전에 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제주지역의 지식재산권 확보 대안

1) 홍보와 교육

제주지역에서도 일반인 대상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가 필요하다. 이미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사안에 따라 기업인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나 제주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학생 대상 교육과 홍보, 진로 등으로 유도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전담 부서(기구) 설치 및 운영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는 국가차원의 문제이나 저작권 사안에 따라 개인에게 법적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FTA 관련 콘텐츠산업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라 본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 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굴→생산→등록→재원화→관리→재화화’ 등 일련의 과정을 단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괄처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부서 설치가 어려우면 제주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3) 지식재산관리 시스템 정비

이는 전담기구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나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개인별, 지역별, 국가별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 상품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도청, 행정시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물(책자, 영상물, 사진자료,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명기하고, 이를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부서에 귀속되고 있으나, 이를 영구히 보관하고, 권리권을 확보하는 것이 FTA 이행 시 지역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의 한 방편으로 제주도의 전통지식자원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해서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제주도의 지식자원을 공공재로 확정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4) 전문 인력 확보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FTA 체결 국가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산업별 해당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하여 제주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고용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5) 제주지역의 콘텐츠산업 육성·보호 정책

강준구·박영일(2011:20)에 의하면 FTA 대비 국내의 콘텐츠 제작 기반 강화 방안으로 ‘콘텐츠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제작비 조달기반 강화, 콘텐츠 해외진출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운영, 시청각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창구 도입, 공정경쟁 정책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콘텐츠산업 육성·활용은 주로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때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재료인 전통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본다. **JDI**

* 참고자료

- 강준구·박영일(2011), 『FTA가 국내 콘텐츠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 『KOCCA 포커스』 2011-12호(통권 40호),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순덕·허남춘·주강현(2009), 『제주문화상징물 99선 활용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11), 『2010 저작권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11. 12. 14.), 『한·미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상공회의소(2011), 『FTA 활용 가이드북』.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